



5 해고와 퇴직

5-2 퇴직

노동자의 형편이나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일을 그만두는 것을 퇴직이라 합니다. 퇴직하는데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퇴직할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면 7 일 이내에 미지불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이나 저금 등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규정없이 고용된 사람의 경우	고용주가 퇴직에 합의하지 않아도 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2 주일이 지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는 한 노동자가 고용계약 해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퇴직을 인정한 후에 노동자가 퇴직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신청은 신중히 합니다. 계약시에 퇴직시의 조건과 수속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원증이나 대여된 제복, 건강보험증 등도 고용주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